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285호 2017. 7. 28(금)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26호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7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26호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1을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사무위임) 조례 제4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품의 취득

2. 제16조에 따라 불용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및 처분

제3조의 제목 “(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를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증품조서등)”을 “(기증품조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주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의”를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물품구입시”를 “물품구입 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상시”를 “항상”으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물품중”을 “물품 중”으로, “포함)후”를 “포함) 후”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을 “공유재산관리담당 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으로,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물품”을 “해당 물품”으로, “의한 반

납 및 인수증에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물품운용관)상호간”을 “(물품운용관)상호 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1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부구청장”을 “총무국장”으로, “의거 인계 인수한다”를 “따라 인계인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을 “(기록을 생략하는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에 계기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요”를 “필요”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유재산관리과정”을 “공유재산관리 과정”으로, “공사발생품중”을 “공사발생품 중”으로, “매각을 요하는”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직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물품검수조서등)”을 “(물품검수조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에 따른”으로,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0조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7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용권) 썰매장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권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동행시”를 “동행 시”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를 “발급부를 비치하여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용권 판매실적 보고)”를 “(썰매장 운영실적 보고)”로 하고, 같은 조 “당일 사용권 판매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을 “그날 썰매장 운영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다음날”을 “다음 날”로, “구금고에”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음날에”를 “다음 날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다음해 2월말”을 “다음 해 2월 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 용 권(개인, 단체)

영수증(보관용)	영수증(고객용)	입장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입장일시
시설명	시설명	시 설 명
○○사용료 ○○명 ○○원	○○사용료 ○○명 ○○원	입장인원
발권번호	발권번호	사 용 료
현금	현금	할 인
카드	카드	
총액	총액	
일시	일시	

(별지 제2호서식)

사용권 발급부

일자	발권번호	계	어른	청소년	어린이	4인가족	장애인	단체20%	국가 유공자	무료

(별지 제3호서식)

펼매장 운영실적 보고서

구분	일자	요일	계	이용자수		운영수입	비고
				유료	무료		